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04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 9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6나32147 사해행위취소
원고, 항소인	[redacted]군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 주식회사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중앙지방법원 2016. 5. 18. 선고 2015가단5234865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9. 7.
판 결 선 고	2016. 11. 1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A 사이에 2013. 8. 30.(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3. 9. 2.은 오기인 듯하다)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A에게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등기소 2013. 9. 2. 접수 제2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04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성우

판사 여현주

판사 홍득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04

부동산 목록

[1동의 건물의 표시]

[redacted] [redacted]군 G, H 제101동

철근콘리트구조 평지붕(철근 콘크리트구조) 5층 공동주택

1층 28㎡

2층 243.89㎡

3층 240.47㎡

4층 235.341㎡

5층 224.1㎡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제2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8.695㎡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1. [redacted] [redacted]군 G 답 888㎡

2. [redacted] [redacted]군 H 답 30㎡

[대지권의 표시]

1, 2 소유권대지권 918분의 38.5033. 끝.